

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. 2. 17 선고 2020가단2786 판결 [노임반환 및 공사대금 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수

변론 종결 2021. 1. 20.

판결 선고 2021. 2. 17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7,2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창호, 잡철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개인이다.

나. 피고는 건설, 건축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고, D 주식회사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가 발주한 E공사 중 상당 부분을 수급하였다.

다. 피고는 위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상당 부분을 수급한 뒤 원고에게 다시 공사를 도급하였다.

라. 이에 원고는 공사를 수행하였고, 피고는 최종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.

마. 그 후 원고는, 피고와 사이에 최종공사대금 중 5%를 수익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, 그 5%는 67,472,647원이고,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한 공사대금 143,211,6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,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가합12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.

바. 이에 위 법원은 2018. 9. 27. "피고는 원고에게 8,000만 원을 2018. 12. 15.까지 지급한다. 만일 이를 지체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12. 1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.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."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.

사.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아. 그 후 원고는 2019. 3. 27. 소외 F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가단937호로 F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및 경비 2,600만 원, F의 시공지시에 따라 지급한 공사대금 4,610만 원 합계 7,2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.

자. 그러나 위 법원은 2019. 12. 3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, 이에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9나580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20. 10. 16. 항소를 취하하였다.

[인정근거] 일부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, 을 제1, 2, 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

가. 당사자의 주장

(1)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현장소장 F의 노임 2,6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대금 4,61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, 피고는 위 금원 합계 7,2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(2) 피고의 주장 이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소를 제기하였고, 원,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. 게다가 피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위 돈을 지급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 아무런 채무가 없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① 원고 역시 청구금액 7,210만 원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현장소장 F의 노임 2,600만 원, 공사대금 4,610만 원이라는 것인바, 이는 결국 원, 피고 사이의 위 E 관련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였어야 하는 돈이라는 점, ②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했던 위 이전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금액은 청구금액보다 크게 줄어들어 5%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사실상 받지 못하여 이 돈이 청산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자인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결국 원고가 청구하는 위 7,210만 원은 원, 피고 사이의 위 세종특별자치시가 발주한 E 공사와 관련한 약정에 따른 금원이라고 할 것이다.

그런데 이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가합12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사실, 위 소송에서 "피고는 원고에게 8,000만원을 2018. 12. 15.까지 지급한다. 만일 이를 지체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12. 1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"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던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, 위 화해권고결정에는 "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"는 주문이 포함되어 있는바, 이에 따라 원고는 위 E 공사와 관련한 약정에 따른 금원 중 받지 못한 나머지 금원에 관한 청구는 포기한 것이 된다.

따라서 원고는 위 E 공사와 관련한 약정에 따른 금원은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으므로,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김주완